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이유

2006. 4. 28일(법률 제7935호) 개정된 「지방자치법」 제50조의2와 「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함으로써 본문 중 특별위원회의 명칭 부분을 보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본문 중 특별위원회의 명칭 부분 보완 정비
(안 제70조제1항, 제71조제1항 내지 제3항, 제72조 제1항, 제2항, 제82조제1항, 제2항, 제4항, 제85조제1항, 제86조제1항)
- 나.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 심사 및 보고 사항을 보완(안 제85조의2 신설)
- 다.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과 선포에 관한 필요한 사항 보완(안 제86조제1항)

3. 관계법령

- 가.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및 제50조의2
- 나.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
- 다.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

4. 검토의견

본 규칙 개정안은 지난 4월 「지방자치법」 등 관련법 개정으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「윤리특별위원회」를 별도 구성·운영함에 따라

- 현재 「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」에 의거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중인 기존의 「징계자격특별위원회」를 「윤리특별위원회」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관련 조례 및 규칙내용 중 명칭부분을 개정하는 것임
- 또한 의원의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하는 내용도 수반하고 있어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